이천시하수도사용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I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Ⅱ. 제출일자 : 2002. 12. 11.(2002. 12. 1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Ⅲ. 근거법령 : 하수도법 제21조(사용료 등) 제1항

Ⅳ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하수도요금이 생산처리원가에 비해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아 하수도 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및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○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의 업종별 하수도요금을 평균 15% 인상함.(안 별표 2)

3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요금이 생산처리 원가에 비해 평균단가 한 전지히 낮아 하수도 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및 경영의 합리화추진을 위해 하수도요금 평균 15% 인상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천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